대·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 안내 자료

- '24. 04. 5(금)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-

1 사업 참여자 역할

□ 출연기업(원청)

○ **(과제 신청)** 중소기업 **제출 서류**를 **일괄 취합***하여 **협력재단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**(https://fund.win-win.or.kr) 통해 **신청·접수**

* **제출 서류** : 공고문 붙임①~④,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, 산재완납증명원,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, 견적서,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등 (제출 서류 작성 및 준비 : **중소기업** / 중소기업 제출 서류 취합·일괄제출 : **출연기업**)
* **제출 방법** :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→ 회원가입 승인(재단) → 시스템 과제 신청 작성 및 신청서 제출(사업 계획서 첨부 : 지원목적, 지원내용, 지원대상, 지원금액 등 사업개요를 **출연기업**이 **작성**하여 제출) → 과제 승인(재단)

> **※ 사업 계획서의 사업비**(소요예산)**에 대하여, 출연기업 및 중소기업 부담률**(부담금액) **작성, 재단 일반관리비(**`**기금 활용 금액의 5% 별도) 내용도 함께 명시**

○ **(과제 변경)** 과제 신청과 동일하게 **중소기업 제출 서류를 취합**하여 **재단 종합관리시스템**(https://fund.win-win.or.kr)에 **신청·접수**(필요시)

* **제출 서류** : 공고문 붙임①,③④, 견적서, 카탈로그 또는 도면 등 변경 관련 서류 일체
* **제출 방법** : 재단 종합관리시스템 과제 현황 → 과제 변경 클릭 → 지원금액, 지원기간 등 변경 내용 작성 및 신청서 제출(변경 사업계획서 첨부) → 과제 승인(재단)

○ **(공문 접수·발송) 협력재단**이 **발송**하는 **공문내용***을 **확인**하여 **회신**

- **(비용집행)**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, 협력재단에서 발송하는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어 공문으로 회신(상생협력기금 집행 요청)

* 해당 공문 內 해당 사업 상생협력기금 활용금액 5%에 대하여 출연기업 기(旣)출연금을 활용해 협력재단이 일반관리비로 수취·활용 내용 포함

○ **(기금출연) 재단 종합관리시스템**을 통해 **출연 신청** 및 기업별 전용 가상계좌로 **출연금 입금**(재단 일반관리비 5% 포함, 기(旣) 출연금 활용 가능)

*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사업으로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필요

□ 중소기업(수혜대상)

○ **(제출 서류작성·준비)** 필수 **제출 서류**를 작성·준비하여 **출연기업**에 **전달**

* **전달 서류** : 공고문 붙임①~④,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, 산재완납증명원,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, 견적서,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등

> **※ (사업신청서) 소재지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작성**
> **※ (사업계획서) 기존 설비의 위험 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 평가 방식으로 작성**
> **※ (선지급 신청) 지원금액의 70% 신청 가능**(공고문 붙임①의 선급금 신청)

○ **(회원가입)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**(https://anto.kosha.or.kr/)에 **회원가입**, 부여받은 ID를 공고문 붙임④에 작성

* 공단 시스템 회원가입 시, '**신청 사업장**'으로 회원 구분 선택

○ **(심사 대응)** 적합성 검토(협력재단), 서류평가·현장평가(산업안전보건공단) 등 **선정 과정 중 제출 서류 미비 사항 보완, 현장 검토 시 협조 필요**(중소기업)

> **※ 신청 자격 비해당, 서류 미첨부, 지원 불가 품목 신청 등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이 진행되거나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**
> **※ 단,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 시 부여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**

○ **(과제수행)** 선정된 중소기업은 **사업계획서 따라** 기한 내 **공정**을 **개선**

- **(선금 지급)** 사업 신청 시 선급금을 신청하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*

* **비용 집행** : 상생협력기금(협력재단) + 정부재원(산업안전보건공단) → 중소기업
* **제출 서류** : 선금 지급 희망 시 지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보증보험증권, 중소기업 사업주(법인은 법인명) 통장사본 및 지급신청서 등을 **공단 시스템에 제출에** 제출

○ **(과제 변경)** 필수 **제출 서류**를 작성·준비하여 **출연기업**에 **전달**(필요시)

* **전달 서류** : 공고문 붙임①,③④, 견적서, 카탈로그 또는 도면 등 변경 관련 서류 일체

○ **(과제 완료)** 공정개선이 완료되면 **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**을 통해 **개선 완료 확인 요청**

- **제출 서류** : 개선사진, 계약서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원가검토보고서, 지급보증보험증권, 지급 통장 사본,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, 원청의 지원 내역 증명

○ **(사후관리 대응)** 설비개선 완료 다음 연도부터 실시되는 **산업안전보건공단**의 **사후관리 및 사후기술지도 대응**

□ 협력재단

○ **(적합성 검토)** 출연기업이 제출한 과제(변경 과제 포함)에 대하여 중소기업 여부, 기금 사용 용도 및 과제 적합성 등 요건검토를 통해 기금지원 결정

※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중소기업 최종 결정

○ **(서류 이관)** 상생협력기금 지원 **적합성 검토를 통해** 기금지원이 결정된 **중소기업 제출 서류 일체**를 **산업안전보건공단**에 **이관**(변경 과제 포함)

* 이관받은 서류 접수, 서면·현장평가,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

○ **(결과 통보)**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**지원기업 선정 결과** (상생협력기금 집행 금액 포함)를 **출연기업(원청)에게 안내**

○ **(기금집행) 상생협력기금** 활용 **선지급, 사후정산 집행**(재단 → 중소기업)

- **(선금 지급)** 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이 선지급을 요청한 경우, **지원**이 **결정**된 **금액**의 **최대 70% 지원 가능**(필요시)

- **(사후정산) 공정개선 완료** 확인 **중소기업***에게 **잔금 집행**(재단 → 중소기업)

*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공정개선 완료가 확인된 중소기업(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력재단으로 공정개선 완료 결과 공유)

□ 산업안전보건공단

○ **(서류 접수)** 재단으로부터 이관된 **중소기업 제출 서류 접수**

○ **(지원기업 선정)**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**심사위원회**에서 지원 대상 **중소기업 최종 결정**

- **(서류검토)**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한 **신청 자격** 등 **적정 여부** 확인

- **(현장검토)** 신청서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**공정개선 적정성 등 확인**

* 해당 소재지에 공정개선 대상 보유, 과거 동 사업 관련 지원 이력, 개선계획의 적정성 등

○ **(선정 통보)** 최종 선정 지원기업 선정 결과를 재단에 통보

○ **(선금 지급)** 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이 선지급을 요청한 경우, **지원**이 **결정**된 **금액**(정부재원)의 **최대 70% 지원 가능**(필요시)

○ **(성과확인)** 중소기업의 개선 확인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과 일치하게 개선을 완료하였는지 지원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

* 공단은 지원 중소기업의 성과 확인 결과를 재단으로 통보하여 정보공유

○ **(사후정산) 공정개선 완료** 확인 **중소기업***에게 **잔금 집행**(재단 → 중소기업)

*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공정개선 완료가 확인된 중소기업(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력재단으로 공정개선 완료 결과 공유)

○ **(사후관리)** 지원 다음 연도부터 정한 기간(최대 5년) 동안 공정개선 설비를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사용 등을 하고 있는지 확인(공단)

※ 보조금 환수사유 발생시 지원취소 후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(공단 지원금에 한하여 사안에 따라 추가제재금 최대 5배 이하 추가환수)

□ 참고 및 유의사항

○ 출연기업은 **지원 가능 품목 여부**를 **협력재단**에 요청하여 **사전 검토** 가능

○ **선정 통보 이전**에 **추진**한 **사업**은 **지원 대상에서 제외**

[참고] 주요 추진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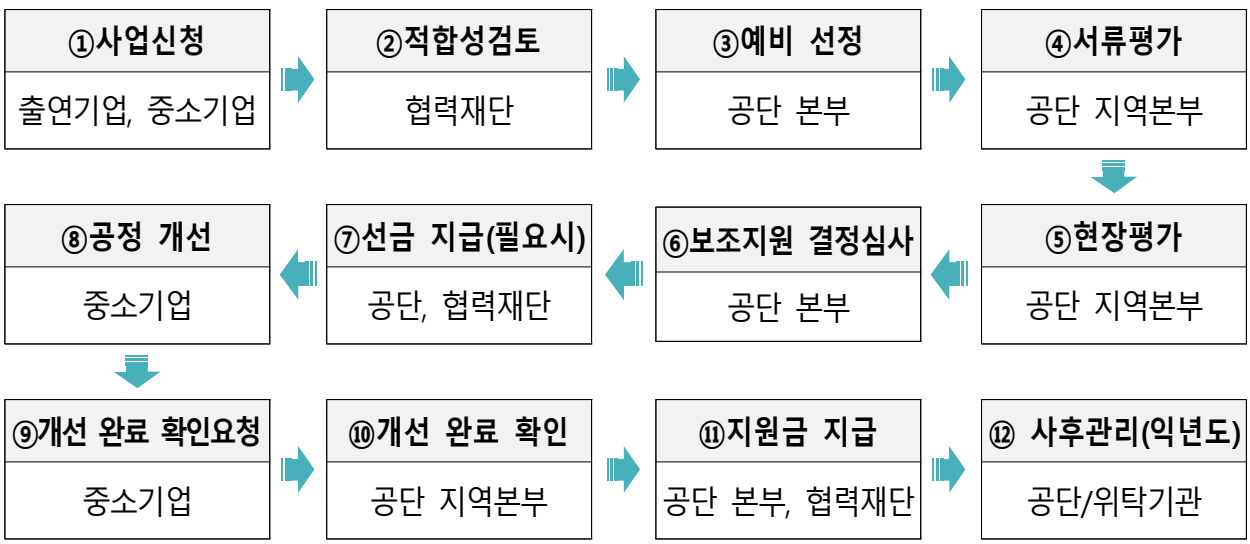

2 주요 질의 내용

◎ 이동 · 휴대가 용이한 전기 · 기계기구 및 수공구(지원불가 사항) 관련

<지원 불가>
○ 해당 설비를 밀거나 끄는 등 이동하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

<지원 가능>
① 고정된 배관 등에 고정 연결되어 이동하면서 작업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② 바퀴 등이 제거됨에 따라, 이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
③ 바퀴가 있더라도 고중량 등의 이유로 이동하면서 작업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◎ 설비(기존 – 개선) 지원 예시

<지원 불가 예시>
① 전단기(절단기) ↔ 레이저 가공기
② CNC선반 ↔ 호빙기 또는 레이저 가공기
③ 드릴기 ↔ MCT

<지원 가능 예시>
① NCT · 프라즈마 절단기 ↔ 레이저 가공기
② 범용 선반 ↔ CNC 선반
③ 파이프 톱절단기 ↔ 파이프 레이저 절단기

◎ 기존 수작업을 설비 도입으로 공정개선 지원 가능한 경우

① 도장부스와 같이 특정 장소로서 고정된 설비를 이용해서 수작업을 하는 표면처리공정(도장, 도금, 쇼트 등)
② 운반, 포장과 같은 인력 보조작업을 자동화공정(컨베이어, 취출로봇 등)으로 대체하는 경우
③ 고정된 설비*를 이용한 인력 용접작업을 로봇형 용접기(자동화설비)로 대체하는 경우
* 휴대형 직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수작업은 '고정된 설비'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불가합니다.

◎ 원가계산용역기관 리스트(☜클릭)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「예정가격작성기준」제31조(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)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른 원가검토기관(등록증 또는 인증서로 확인)

◎ 사업자등록증, 지급보증보험증권 등 각 추진 단계별 중복 제출 여부

○ 각 단계별로 기존 제출하신 내용과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

◎ 문의처

- 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 정주호 대리, 02-368-8489 (사업절차 문의)
- (산업안전보건공단) 정영성 과장, 052-703-0766 (지원 가능 여부 문의)